##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 제2901호

제출년월일 2021. 11. . 제 출 자 김포시장

#### 1. 제안이유

○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하고,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국 조직 인력 반영 등 2022년 조직·정원 조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정원 총수 조정(안 제2조)
  - 1,491명 ⇒ 1,533명 (증 42명)
- 나.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나. 관계법령·현행 자치법규 : 붙임
- 다. 예산조치 : 붙임
- 라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- 가) 예고기간 : 2021. 10. 29. ~ 2021. 11. 08.(10일)
  - 나) 예고결과 :
  - 2) 부서협의결과
    - 가) 규제사전심사 : 해당 없음
    - 나) 성별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  - 다) 부패영향평가 : 원안 동의
  - 3) 중앙 및 도 관련부서
    - 가) 중앙부처 :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
    - 나) 경 기 도 : 기획담당관

# 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김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1,491명"을 "1,533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"1,472명"을 "1,508명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19명"을 "25명"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행 정 과
입 안	실·과·소장 성 명 팀 장 직위·성명	행정과장 신 승 호 조직팀장 조 문 순
자	담 당 자 성명·전화	지방행정주사보 이 승 묵( <b>☎</b> 2100)